

독일의 부정청탁 금지 관련 법제

정보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I. 머리말

‘청탁’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직무행위를 수행할 것을 의뢰하는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은 직무수행을 그르치는 행위로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는 ‘부패’의 한 유형이다.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의 회원국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27일 ‘부패에 관한 형법협약’¹⁾과 ‘부패에 관한 민법협약’²⁾에 서명하였으며, 이 협약은 2002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현재 43개국이 이 협약을 인준하였다. 독일도 이 협약에 서명하였지만, 아직 인준을 하지 않고 있어 이 협약이 독일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연방과 주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들을 마련하여 부

패에 대응해 오고 있다. 본 글에서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독일의 부패방지에 관한 입법 사례와 제도를 소개한다. 입법의 내용에는 주로 이에 대한 제도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서 입법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II. 연방의 부패방지법 제정 시도

연방차원에서 부패의 예방과 척결을 위한 입법의 노력은 우선 1997년 부패방지법³⁾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은 주로 형법과 공무원직무법을 개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모에 있어서 경쟁을 제한하는 협상의 금지와 거래에 있어서 부정증수뢰행위의 금지를 형법에 도입하는 것이었다. 그 후 2002년 6월 11일 ‘부패기록부



- 1) 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SEV Nr. 173).
- 2) Civi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SEV Nr. 174).
- 3) Gesetz zur Bekämpfung der Korruption vom 13. August 1997.

의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연방하원(Bundestag)을 통과하였으나, 연방참의원(Bundesrat)에서 거부되어 법률로 제정되지 못하였다. 이 법률안은 2001년 12월 12일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의 제안으로 경쟁제한법(GWB)⁴⁾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이 개정안은 공공계약발주담당자가 계약 발주를 하기 이전에 신뢰할 수 없는 사업체를 발주과정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즉 신뢰할 수 없는 사업체를 연방경제부에서 운영하는 '부패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발주시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등록부에는 배제된 모든 사업체들에 관한 정보들이 계약담당자들을 통해서 신고되어 저장되어 있다. 담당자들은 공공계약절차에서 이 등록부의 기록상향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사업체들이 형법상 직무범죄를 범한 경우 이 기업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었다.⁵⁾ 하지만 이 법률안은 위헌성 등의 문제로 연방참의원(Bundesrat)에서 거부되었다.

그 후 위헌성의 문제를 제거하여 독자적인 부패등록부법률안이 다시 제출되었다.⁶⁾ 이에 의하면 연방 경제부에 등록부를 설치하여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들로 하여금 사업체들을 신고하

도록 되어 있었다. 사업체 자신의 과오로 인한 경우 사업체들은 관공서의 발주절차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법률안도 입법되지 못하였다.

2009년 4월 20일 '공공(또는 행정)발주법의 현대화를 위한 법률'⁷⁾을 통하여 경쟁제한법 제4장 공공계약의 발주⁸⁾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연방차원에서 부패에 관한 일반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법률 규정이나 각 주의 법률, 행정규칙, 지침 등을 통해서 규제되고 있다.

III. 주(州)의 부패방지법

1. 베를린주 부패방지법

베를린주는 독자적인 부패방지법을 가지고 있다. 정식명칭은 '부패가 의심스러운 기업체에 관한 등록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등록부법')'⁹⁾이다. 2006년 4월 19일 제정되어 2006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2010년 12월 1일 대폭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다시 발



4)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GWB).

5) BT-Drucks. 14/9356, S.3.

6) BT-Drucks. 16/9780.

7)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Vergaberechts vom 20. April 2009.

8) 공공계약의 발주를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법 제4장은 제1절 공공계약의 발주절차, 제2절 사후심사절차, 제3절 기타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9) Gesetz zur Einrichtung und Führung eines Registers über korruptionsauffällige Unternehmen in Berlin, Korruptionsregistergesetz, KRG.

효되었다.

1) 법률의 목적(제1조)

베를린주는 부패 척결과 예방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보제공처를 설치하고 있다. 이 정보제공처는 자연인과 법인의 비신뢰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기 위해서 등록부를 운영하는데, 이를 '부패등록부(Korruptionsregister)'라고 한다. 부패등록부는 공공 계약의 담당공무원(öffentlichen Auftraggeber)이 입찰자, 지원자, 잠재적 수임자의 신뢰성을 의무적으로 심사할 때에 이를 지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여기서 공공계약 담당공무원은 연방의 경쟁제한법(WBG) 제98조에서 말하는 모든 공공계약담당자를 말한다.¹⁰⁾

2) 정보제공처와 부패등록부(제2조)

중앙정보제공처는 베를린주의 시발전 및 환경부(약칭 '시발전부')에 설치하며, 여기서 부패등록부를 운영한다. 중앙정보제공처가 공공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리지 않는다. 부패등록부는 데이터를 자동화된 형태로 등록할 수 있다. 이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은 자동화된 호출절차

로 수행된다(제2조).

3) 등록요건(제3조)

불법노동 및 불법고용, 탈세, 경쟁 위반의 협상, 자유로운 경쟁을 무산시키는 그 밖의 위반을 배경으로 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또는 이러한 거래에서 부패에 해당하는 법률위반이나 그 밖의 법률위반의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부패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특히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는 규정 위반은 다음과 같다. 수뢰(형법 제331조), 부정처사수뢰(형법 제332조), 뇌물공여(형법 제333조), 부정처사를 위한 뇌물공여(형법 제334조), 특별히 중한 부정처사 수뢰와 부정처사를 위한 뇌물공여(형법 제335조), 영업적 거래에서의 부정수재와 부정증재(형법 제299조), 공급의 모집시 부당경쟁 협상(형법 제298조), 임금의 체불 및 횡령(형법 제266a조), 배임(형법 제266조), 사기(형법 제263조), 신용사기(형법 제265b조), 보조금사기(형법 제264조), 자금세탁,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가치의 은닉(형법 제261조), 의원매직(형법 제108e조), 탈세(세법 제370조), 무기통제법 제19조, 제20조, 제20a조, 제22조, 대외경제법 제34조, 사회법 제3권 제404조(외국인의 불법 고용), 노동자파견법¹¹⁾ 제15조, 제15a조, 제16조(불법 고용), 국경을 넘어 파견된 근로자



10) 경쟁제한법 제99조에는 공공계약의 개념과 종류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11)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와 정규적으로 국내에 고용된 근로자를 위한 강제적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 제23조¹²⁾, 불법노동방지법¹³⁾ 제8조 내지 제11조(제3조 제1항).

부패등록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증거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질서위반절차에서 범칙금이 확정된 경우¹⁴⁾, 형사소송법 제153a조에 의해서 절차의 중지가 확정된 경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언급한 범죄가 행해진 합리적인 혐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제2항).

또한 공공계약발주에서의 배제가 제1항의 법률위반과 관련하여 사업자나 자연인의 비신뢰성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들을 배제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제3항).

4) 통지의무(제4조)

질서위반행위의 소추기관과 형사소추기관은 등록에 해당하는 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법률위반행위를 정보제공처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통지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공공계약담당자는 제3조 제3항의 공공

계약발주에서 배제한 경우 이를 정보제공처에 통지해야 한다. 정보의 계속 저장에 모순이 있는 상황을 안 경우 이를 정보제공처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제4조).

5) 등록 대상(제5조)

통지의무를 부담하는 기관은 등록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정보제공처에 다음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1. 신고관청
2. 신고일시
3. 신고관청의 사건 번호
4. 해당 사업체와 지점(회사, 이름, 법형식¹⁵⁾, 법정 대리인의 성명, 인적 단체의 경우 단체 대표자의 성명, 기업의 주소 및 거소, 등기법원 및 상업등기부 등록번호, 매출세 증명번호),
5. 해당 자연인의 성명, 출생년월일, 출생지, 주소
6. 신고 이유, 등록요건의 종류
7. 공공발주계약의 배제 일시 및 기간 등이다.

법률위반과 관련이 있는 사업체에 대한 정보는 단지 업무의 수행에 책임을 지는 자가 스스로 행위하였거나 이 자에게 질서위반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한 감독책임 및 조직상 책임이 존재하



12) Arbeitnehmer-Entsendegesetz.

13) Schwarzarbeitsbekämpfungsgesetz.

14) 독일의 경우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법인의 불법행위는 질서위반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15)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과 같은 법적인 형식.

는 경우에만 통지될 수 있다. 법률위반이나 위임 배제가 오로지 기업의 독자적인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경우에는 이 기업의 일부 정보가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제1항). 그리고 등록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그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되어야 한다(제2항).

6) 조회의무(제6조)

공공계약 담당자는 15,000유로 이상의 공공계약의 발주를 결정하기 이전에 입찰자, 지원자, 잠재적 수임자에 대한 부패등록부의 등록내용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정보제공처에 조회할 의무가 있다. 공공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하청업자에 대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15,000유로 이내에서 발주가 예정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은 이들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정보제공처에 조회할 수 있다. 공공계약 담당자는 조회의 목적으로 해당 자연인의 성명, 출생년월일, 출생지, 주소(제5조 제1항 제1문 제5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7) 기타 정보의 요청(제7조)

정보제공처는 부패등록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제공할 기관은 1. 공공계약발주의 결정을 담당하는 연방 및 주의 공공기관, 2. 공공계약발주의 결정을 사후 심사하는 발주위원회, 3. 공공계약발주의 결정을 다루는 법원, 4. 법원과 범죄 및 질서위반

행위를 소추하는 검찰청, 5. 경제범죄의 예방과 소추를 담당하는 경찰관서 등이다. 정보요청기관은 정보를 요청한 목적을 입력해야 한다. 요청정보의 제공은 요청기관의 직무수행에 기여하여야 한다.

8) 기록의 삭제(제8조)

부패등록부의 기록내용은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는 삭제되어야 한다. 즉, 1. 질서위반행위의 절차의 경우 범칙금의 한도가 1,000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2. 그 밖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면 삭제된다(제1항). 하지만 신뢰의 회복이 증명된 경우에는 신청(요청)에 의하여 그 이전에도 삭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회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인 또는 법인이 적절한 조직적 인적 조치를 통해서 법률위반의 반복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경우이다.
2. 법률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였거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이다.
3. 등록 후 적어도 6개월 이후에 삭제되는 경우이다(제2항). 부패등록부에 여러 가지 사유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준수기간이 경과하거나 모든 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뢰성이 증명된 경우이다(제3항). 공공계약 담당자에게 신뢰성의 회복이 증명된 경우 이를 정보제공처에 통지해야 한다(제4항). 기간은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질서위반절차에서

범칙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정 효력이 있는 날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53a조에 의해서 절차의 중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최종 중지된 날로부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언급한 범죄가 행해진 합리적인 혐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9) 통지의무

해당 사업체와 자연인은 제5항에 의한 등록과 삭제를 지체 없이 통지받아야 한다. 정보제공처는 기업과 자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들과 관련되는 부패등록부의 등록에 관한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10)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가능성

제3자가 이 법률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베를린주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된다.

2.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주 부패방지법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주는 2004년 12월 15일 '부패방지 개선 및 공공계약발주등록부의 설치 및 이행을 위한 법률(약칭 '부패방지법')'¹⁶⁾



16) Gesetz zur Verbesserung der Korruptionsbekämpfung und zur Errichtung und Führung eines Vergaberegisters in Nordrhein-Westfalen, KorruptionsbG.

17) 법적으로 주행정에 종속되어 경제적 수입을 얻는 사업체.

을 제정하였다.

1) 적용범위(제1조)

이 법률이 적용되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관청, 공공기관, 주운영사업체(Landesbetriebe)¹⁷⁾, 주의 자치단체운영사업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주회계감사원, 주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법기관(법원, 검찰, 세관 등)
2. 지방자치단체(예, 시읍면), 자치단체연합, 그 밖에 주의 감독을 받는 공법상의 단체, 공공기관 및 재단
3. 공무원법, 공무원임금법, 고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연합, 그 밖의 주의 감독을 받는 공법상의 단체, 공공기관 및 재단의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
4. 주정부의 구성원
5.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연합의 기관 및 위원회의 구성원
6. 그 밖의 주의 감독을 받는 공법상의 단체, 공공기관 및 재단의 기관의 구성원
7. 법인 및 인적 단체, 절대 다수의 배당이나 의석이 공공기관에 속하거나 그 기관의 기부를 통해 절대적인 부분의 자금을 조달하는 법인 및 인적 단체

8. 제1호, 제2호, 제7호에서 언급한 기관에 공개입찰하기 위한 자연인, 법인 및 인적 단체 등이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제1항). 다만 이 규정들은 교회나 종교단체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2항).

2) 심사기관(제2조)

심사기관은 주회계감사공무원을 포함한 주회계감사원, (시읍면) 자치단체의 회계감사원 등이다(제1항). 입찰, 재정적 후원(Fördermittel)¹⁸⁾, 허가, 금지 및 명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서는 특히 부패가 의심스런 영역으로 추정된다. 부패가 의심스러운 영역과 이와 유사한 작업장은 기관 내부에서 정한다(제2항).

3) 정보제공처(제3조)

재정부가 정보제공처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이를 ‘공공계약발주등록부(Vergaberegister)(이하 ‘발주등록부’)’라고 한다(제3항)¹⁹⁾. 이를 통해서 공공계약발주시(bei der Vergabe öffentlicher Aufträge)²⁰⁾에 공공기관 사이에서의 자연인, 법인, 인적 단체의 신뢰성에 관한 정보가 교환될

수 있다.

4) 발주등록부(제4조)

발주등록부에는 발주의 배제에 관한 정보와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가 되지 아니한 근거에 관한 정보도 저장된다(제1항). 발주등록부의 정보는 공공기간의 발주결정의 준비와 심사에 이용된다. 이 정보는 또한 형사소추기관도 이용한다(제2항). 발주등록부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1. 공공계약의 발주로부터 배제되거나 제5조 제2항에 의해서 등록이 된 자연인에 관한 정보와 2. 공공계약의 발주로부터 배제되거나 직무관계와 관련한 이의 직원이 제5조 제2항에 의해서 등록되어야 하는 과오를 행한 경우 법인 및 인적 단체 또는 이의 구성부분에 관한 정보도 저장되어 처리된다(제3항).

5) 과오(위반)(제5조)

기업(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타인(제4조 제1항 제1호)을 통하여 다음의 규정에서 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오가 존재한다.

1. 형법 제331조 내지 제335조, 제261(자금 세탁, 불법재산의 은닉), 제263조(사기), 제



18) 시장에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영향을 주는 방법.

19) <http://www.vergabe.nrw.de/wirtschaft/Korruptionspraevention/index.html>.

20) 공공계약(Öffentliche Auftrag)이란 관청의 공공계약담당자(위임자)와 사업자 사이에 공급, 공사, 용역 및 현상광고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경쟁제한법(Gesetzes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제99조에서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264조(보조급사기), 제165b조(신용사기), 제166조(배임), 제266a조(Vorenthalten/Veruntreuen von Arbeitsentgelt), 제298조(공모에 있어서 불법 담합), 제299조(증수퇴죄), 제108e조(의원매수), 조세법 제370조

2. 무기통제법 제19조, 20조, 제20a조, 제22조
3. 경쟁제한법 제81조 위반(GWB), 특히 제14조에 의한 가격담합과 경쟁 참가에 대한 담합
4. 노동자과건법 제16조(불법고용)
5. 불법노동금지법 및 불법근로자과건법의 위반이 특히 실체적 또는 비실체적 손해의 범위와 범행의 종류 및 방법과 관련하여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제1항)

이러한 과오로 등록이 되는 경우는 1. 기소가 된 경우, 2. 유죄판결이 난 경우, 3.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4. 형사소송법 제153a조에 의하여 형사절차가 중지된 경우, 5. 범칙금(과태료 고지서)이 확정된 경우, 6. 형사 및 범칙금 절차의 수행 동안, 개별적인 증거의 관점에서 신고기관의 입장에서 중대한 과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고, 수사기관이나 벌금절차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조사목적에 위태롭지 않다고 보는 경우이다(제2항).

6) 정보제공처에 데이터의 전달(제6조)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의 기관은 제7조 제1항에서 언급한 데이터를 발주등록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은 자연인, 법인, 단체와 관련하여 발주배제를 한 즉시 또는 그들에

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5조의 과오가 등록될 것이 인정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제1항).

연방과 다른 주의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제7조 제1항에서 언급한 데이터를 신고할 수 있다.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하여 발주배제를 하거나 그들에게 제5조의 의미의 과오가 등록될 것이 인정되는 즉시 해야 한다(제2항).

신고 관청은 자연인, 법인 및 단체에게 주의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5항에 의한 정보처리에 대하여 발언할 기회를 부여한다. 신고기관은 자신들의 결정 근거를 문서로 기록한다. 신고기관은 제1항의 당사자에게 신고하기 전에 이를 통지한다(제3항).

신고관청은 제7조에 의해 신고된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고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적 구제에 대해서는 유예의 효력이 없다(제4항).

7) 정보제공처의 데이터처리(제7조)

정보제공처는 과오가 있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한다.

1. 신고관청의 성명, 주소, 문서번호, 담당자
2. 신고접수된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의 성명, 출생년월일, 출생지 및 주소
3. 자연인, 법인 및 단체의 대리인
4. 신고일자
5. 신고와 관련한 신고된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의 경제적 활동 또는 영업 기술

6. 상업등기번호
7. 신고관청에 의해서 발주배제의 경우 날짜와 배제 기간
8. 배제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등록될 날짜와 기간
9. 제5조 제1항에 의한 과오의 종류
10. 제5조 제2항에 의한 과오의 절차 단계.

기업의 일부(지점)만이 관련된 경우에는, 이 지점의 데이터만 저장된다. 과오가 기업이나 기업의 일부에 특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인에 의해서 발생된 경우 그리고 과오가 기업내부의 구조적 또는 조직적 결함으로 소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 있게 행동하는 자(책임 있는 자)의 데이터만 저장된다(제1항).

개별 정보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처음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제2항).

발주등록부의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는 5가지가 규정되어 있다(제3항).

1. 등록기간이 경과한 경우. 하지만 늦어도 등록 시점부터 5년까지는 삭제되어야 한다.
2. 배제나 근거를 통지한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에 언급한 관청이 신뢰의 회복을 신고한 경우
3. 제5항에 의한 신고가 되고 배제나 근거를 신고한 관청이 신고의 전달 후 1달 이내에 정보제공처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지 않는 경우. 이 기간 동안 등록이 차단되어야 하고 차단표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4. 형사소송법 제153a조에 의한 절차중지의 예

외를 가진 수사절차 또는 형사(공판)절차의 정지의 경우.

5. 제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6호에 의한 신고에 의한 무죄판결(제3항).

하지만 신고관청이 문서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 그 이전에 등록을 삭제할 수도 있다. 이들이 과오의 재발에 대한 적절한 조직적 인적 조치를 취하고 손해를 배상하였거나 구속력이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경우이다. 사전 삭제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사안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제4항).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의 기관이 발주등록부에 더 이상의 저장을 배제하는 상황을 인식한 경우에는 이를 정보제공처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에 의한 다른 공공기관도 그러한 신고권리를 가진다. 정보제공처는 신고기관이 발주등록부에서 최종 삭제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신고를 지체 없이 전달한다(제5항).

8) 정보제공처에 조회(제8조)

발주기관은 세금을 공제한 25,000유로 이상의 공급 및 용역 발주의 경우 또는 50,000유로 이상 공사발주의 경우 낙찰(수주)받을 입찰자 또는 지원자에 관한 정보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공공계약의 발주 전에 정보제공처에서 조회하여야 한다. 유럽연합의 한계가액을 넘는 발주의 경우에는 공공계약발주법규명령(Vergabeverordnung) 제13조에 의한 정보의 발송 전에 조

회되어야 한다. 언급한 가액 이하인 경우의 조회는 발주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의무적 재량에 속한다(제1항).

정보제공처에 조회할 권리는 발주기관, 심사기관, 검찰청, 주범죄수사청이다(제2항). 이외에도 발주 규모가 50,000유로 이상인 경우 연방 및 각 주의 발주기관도 조회할 수 있고, 각 주의 고등검찰청도 이러한 조회권리를 가진다(제3항).

9) 조회기관에의 데이터 전달(제9조)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해서 정당한 조회가 있게 되면, 조회 기관은 정보제공처로부터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의한 데이터를 전달받는다. 그렇게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정보제공처뿐만 아니라 조회하는 기관에 기록되어야 한다. 조회기관은 전달받은 데이터를 근거로 공공계약발주에서 배제할지의 여부를 자신의 관할 내에서 결정한다(제1항).

한편, 조회기관은 전달받은 데이터를 제4조에 언급한 목적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제2항).

10) 데이터 전달의 안전성(제10조)

발주등록부에 데이터를 전달하고 수령하는 것은 문서로 해야 한다. 팩스도 문서와 동일하다(제1항). 주의 행정절차법 제3a조 제2항 제2문과는 달리 주정부의 행정전산망이나 이 외 이에 상

응한 안전한 행정망에서의 공공기관과 정보제공처 사이의 전자적 데이터 전달은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2항).

11) 주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청구법의 적용가능성(제11조)

주개인정보보호법은 이 법률에 의해서 타인이 자연인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절하게 적용된다. 주정보공개청구법은 제2장(정보제공처와 발주등록처, 동법 제3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 신고의무(제12조)

제5조 제1항에 의한 과오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 제1조 제1항의 기관의 장,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연합의 장, 그 밖의 주의 감독을 받고 있는 공법상의 단체(법인), 공공시설(예컨대, 학교, 연구소, 병원, 교도소 등) 및 재단(제1조 제1항 제2호)의 책임자는 이를 주범죄수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심사시 이러한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 심사를 관할하는 주의 회계감사원의 구성원, (시읍면) 자치단체의 회계감사원의 장, 자치단체심사원(Gemeindeprüfungsanstalt)의 장에게도 적용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관련 관청이나 시설의 장은 신고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제1항).

기관의 장에게 불편부당함에 의심이 있고 이 자가 증언의 허가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1

조 제2문의 통지를 해서는 아니되는 경우에는 최고감독관청이 증언의 허가를 담당한다(제2항).

13) 자문의무(제13조)

심사기관은 주의 관청,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연합, 주의 감독을 받는 공법상의 그 밖의 단체, 공공시설 및 재단의 조회에 제5조 제1항에 의한 과오의 적발가능성과 저지에 관해서 이를 자문할 의무가 있다. 심사기관은 자문의 방식과 범위를 정한다.

14) 인사기록카드(제14조)

심사기관의 무제한 정보요청과 인사기록카드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주공무원법 제84조 제2항 제3문이 준용된다. 제95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15) 정보요청의무(제15조)

제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한 구성원은 개별사례의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업의 참가, 증권재산, 신용 재산, 토지소유와 같은 재산관계에 관한 정보를 심사기관에게 제한 없이 제공한다. 주정부의 구성원이 이와 상응하게 정보요청의무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가의 절차의 방법과 종류는 주정부가 업무규정에서 정한다.

16) 공공계약의 발주 및 재산 처분을 위한 신고(제16조)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의 기관은 이 기관을 관할하는 심사기관, 자치단체영역에서 행해지는 발주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심사청, 모든 주 영역에서 행해지는 발주의 경우에는 주회계감사원에 공공계약의 발주를 신고한다. 이때 발주 금액이 200,000유로 이상이고 그 발주는 법적으로 독립된 제3자이지만, 발주기관의 통제를 받는 내부발주(Inhousegeschäfte)가 아니어야 한다. 이것은 재산의 처분에도 적용된다. 성명과 가격이 포함된 입찰자 및 지원자의 제안(입찰)의 목록과 낙찰로 결정한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10조를 준용한다. 심사청은 서로 자신들의 관할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요청 의무가 있다.

17) 공시의무(제17조)

제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구성원은 장관에 대하여, 제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구성원은 주행정청, 주의 감독을 받는 공법상의 단체, 시설, 재단의 장은 감독기관의 장에 대해서, 제1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구성원은 시설의 장에 대해서 문서로 다음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행된 직무 및 자문계약
2. 주식회사법 제125조 제1항 제3문에 의한 감독위원회와 그 밖의 다른 통제위원회의 참여
3. 주정부조직법 제1조 제1항 제2항에 언급된 관청과 공공시설의 공법상 또는 사법상 형

태에서 독자적인 직무영역의 기관에서의 구성원 여부

4. 그 밖의 사법상의 기업의 기관의 구성원 여부
5. 단체 및 이와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

이러한 정보들은 적절한 형식으로 매년 공시되어야 한다.

18) 부업활동의 신고의무(제18조)

자치단체의 장은 주공무원법 제49조에 의해서 자신들의 활동을 자치단체의 의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9) 신분관계의 종료 후의 신고의무(제19조)

주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직 직원이 이전의 활동으로부터 급여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받은 경우에는 연방공무원신분법 제41조와 주공무원법 제52조 제5항이 준용된다. 예컨대 연방공무원법 제41조는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의 효력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이 박탈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

해서 기본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공무원관계가 종료되어 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공무와 관련하여 수여받은 직함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 주공무원법 제52조 제5항은 유죄판결로 인한 공무원관계의 종료의 경우 휴직 기간은 5년이고 그 밖의 다른 경우는 관계기관에서 정하지만 최대 5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에서 물러난 경우 직원은 문서로 제1항에 의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 통지는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20) 사안원칙²²⁾(제20조)

적어도 제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기관 내의 최소한 두 사람은 공공계약의 발주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21) 순환보직제(제21조)

25,000명 이상의 거주민이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제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기관의 직원은 부패의 위험이 있는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 한편, 연방공무원법(BBG, Bundesbeamten-gesetz) 제42조에는 보수, 선물, 그 밖의 이익의 수령을 금지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신분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서 보수, 선물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약속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된다. 현재 또는 최근의 고용주의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1항).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한 자는 의무관계를 근거로 획득한 것을 무효(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환수)가 명령되지 않거나 환수조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그것이 국가에 반환되지 않는 한 고용주의 요청으로 반납해야 한다(제2항).

22) 사안원칙이란 네 개의 눈(즉, 두 사람)에 의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원칙으로 공공계약발주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한 감시자가 두 사람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Vieraugenprinzip, the two man rule).

고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기록되어 관할 감독관청에 통지되어야 한다.

22) 법률의 효력의 재고(제22조)

이 법률의 효력은 3년의 경험기간이 경과한 후 주정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주정부는 이를 주의회 내부행정 및 행정구조위원회와 지방자치정책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3) 발효 및 폐기(제23조)

이 법률은 2005년 3월 1일 발효되어 2012년 12월 31일 폐지된다.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패가 줄어들지 않는 한 연장되거나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3. 함부르크주 부패등록부법 초안

함부르크주는 2004년 2월 18일 '부패등록부의 설치와 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부패등록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년 2월 13일 법률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그 후 규칙에 사업자등록

부를 두어 부패등록부의 역할을 대신하였으나, 2012년 3월 13일 새로운 부패등록부법 초안을 가결하였다.

IV. 행정규칙 등에 의한 부패방지

1. 연방정부의 부패방지 지침

연방정부는 2004년 7월 30일 연방행정에 있어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²³⁾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2012년 2월 9일 연방정부의 부패방지 지침을 각 주에서 전환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연방행정의 부패 예방 권고안²⁴⁾을 제정하였다.

2.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1996년부터 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96년 10월 8일 주범죄수사청에 '부패척결을 위한 조정그룹(KGK)'²⁵⁾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조정그룹의 직무는 부패예방과 척결을 다루는 주 내의 모든 관청과 공공기관이 효



23) Richtlinie der Bundesregierung zur Korruptionsprävention in der Bundesverwaltung(http://www.bmi.bund.de/SharedDocs/Downloads/DE/Themen/OED_Verwaltung/Korruption_Sponsoring/Richtlinie_zur_Korruptionspraevention_in_der_Bundesverwaltung.pdf?__blob=publicationFile).

24) Empfehlungen zur Korruptionsprävention in der Bundesverwaltung(http://www.bmi.bund.de/SharedDocs/Downloads/DE/Themen/OED_Verwaltung/Korruption_Sponsoring/empfehlungen_zur_richtlinie_korruptionspraevention_de.pdf?__blob=publicationFile).

25) Koordinierungsgruppe Korruptionsbekämpfung.

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²⁶⁾ 또한 주는 1997년 10월 31일부터 ‘공공계약발주의 참여 배제를 위한 신고 및 정보제공처’²⁷⁾를 설치하고 있다. 발주기관은 세액을 제외한 50,000유로 이상의 공공계약의 발주인 경우 정보제공처에 조회할 의무를 진다.

3. 바이에른주

바이에른주는 1990년 중반부터 최고 건축관청에 ‘공공계약발주의 배제를 위한 정보제공처’²⁸⁾를 두고 있다. 이 등록 목록에는 부패를 근거로 한 배제 외에도 불법노동과 불법과건법 위반의 경우도 등록되어 있다.

4. 브레멘주

브레멘주는 ‘공공기관에 있어서 부패예방과 대처를 위한 행정규칙’에서 내무 및 스포츠부에 공공계약발주를 위한 신고 및 정보제공처를 두고 있다. 주의 모든 기관의 공공계약담당자는 공공계약을 발주하기 이전에 여기서 조회를 하여야 한다. 등록부에는 공공계약발주의 배제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다(브레멘주 공공계약발주법(제9조 제4항)²⁹⁾). 부패방지를 위해서 중앙부패

방지기관³⁰⁾을 운영하고 있다.

5. 헤센주

헤센주는 2007년 11월 14일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내리는 공동의 지시회람(Runderlass)을 통하여, ‘응모자의 신뢰성에 문제가 되는 중대한 과오가 있는 경우 공공계약발주에서 배제’ 한다는 중앙 신고 및 정보제공처가 운영되고 있다.

6. 니더작센주

니더작센주는 2000년 2월 1일 ‘신뢰할 수 없는 지원자의 공공계약발주에서의 배제’에 관한 지시회람을 통하여 주 관청의 부패등록부가 도입되어 있다. 이 지침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득의 획득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금의 지불, 현금유사한 기부(상품권, 입장료, 전화카드, 현금카드 등), 물건의 양도(보석, 자동차, 건설기계 등), 사적 거래에서의 특별한 우대(무이자 대부, 할인 등), 사적인 부수활동을 위한 상당성을 넘어선 사례의 지급(계약서, 감정서 등), 부수활동의 부여 또는 중개, 여행시 차량 티켓 및 항공권의 제공, 상당성을 넘어선 숙소의 제공, 특별전시회의 초대, 유산법상의 특혜, 성행



26) <http://www.lka-bw.de/LKA/Seiten/KGK.aspx>.

27) Melde- und Informationsstelle für Vergabesperren.

28) Informationsstelle für Vergabeausschlüsse.

29) §9 Abs. 4 VergabeG für das Land Bremen, v. 17.12.2002, GBl. 594.

30) ZAK, Zentrale Antikorruptionsstelle.

위 수용 및 수인, 그 밖에 가치가 적은 것이라도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시회람을 기초로 2008년 12월 16일 ‘부패예방과 부패척결을 위한 지침(반부패지침)’³¹⁾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부패의 위험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또한 부패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서 행동요령을 제공한다.

7. 라인란트팔츠주

라인란트팔츠주는 2000년 ‘공공기관의 부패척결’³²⁾이란 행정규칙을 통하여 부패등록부를 두고 있다. 재정부에서 이를 관리하며 주의 모든 공공계약담당자에게 관청의 신뢰할 수 있는 지원자들의 목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8. 쉴레스비히 홀스타인주

쉴레스비히 홀스타인주는 2003년 10월 1일 공공기관에 있어서 부패예방 및 부패척결 지침³³⁾을 제정하여 부패기업의 목록을 규정하고 있다.



31) Richtlinie zur Korruptionsprävention und Korruptionsbekämpfung in der Landesverwaltung, Antikorruptionsrichtlinie(<http://www.mi.niedersachsen.de/download/35064>).

32) Bekämpfung der Korruption i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33) Richtlinie Korruptionsprävention und Korruptionsbekämpfung in der Landesverwaltung.

V. 형법에 의한 부패방지

1. 수뢰죄(제331조)

공무원 또는 공적 업무를 위하여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가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직무수행에 대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수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제1항).

그러나 행위자가 스스로 요구하지 아니한 이익을 약속받거나 수수한 경우, 관할관청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익의 수수를 사전에 승인했거나 행위자가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그 수수를 허가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법관 또는 중재법관이 이미 행한 재판 또는 장래 행할 재판에 대한 대가로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수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2. 부정처사수뢰죄(제332조)

공무원 또는 공적 업무를 위하여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직무행위를 행하거나 장래 행할 것

에 대한 대가로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수수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제1항)

법관 또는 중재법관이 법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재판을 하거나 장래 행할 것에 대한 대가로서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수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제2항).

행위자가 장래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수수한 경우, 행위자가 사전에 타인에 대하여 1. 직무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2. 직무행위가 그 재량에 속하는 경우 이익에 영향을 받은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태도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3. 뇌물공여죄(제333조)

공무원, 공적 업무를 위하여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 또는 연방군 군인에 대하여 공무원 등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공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제1항).

법관 또는 중재법관에 대하여 이미 행한 재판 또는 장래 행할 재판에 대한 대가로서 법관 등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에 처한다(제2항). 관할관청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익을 수수한 자의 수수행위를 사전에 허가했거나 이익을 수수한 자의 지체 없는 신고에 따라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제3항).

4. 부정처사 관련 뇌물공여죄(제334조)

공무원, 공적 업무를 위하여 특별한 의무를 지는 자 또는 연방군 군인에 대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직무행위를 행하거나 장래 행할 것에 대한 대가로서 공무원 등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공여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그 행위가 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제1항).

법관 또는 중재법관에 대하여 1. 법관의 의무를 위반하는 재판행위나, 2. 장래 법관의 의무를 위반하게 될 재판행위의 대가로서 법관 등 또는 제3자를 위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공여한 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제2항). 미수범은 처벌한다.

행위자가 장래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공여한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1. 직무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의무의 위반, 2. 직무행위가 그 재량에 속하는 경우, 이익에 영향을 받은 재량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태도를 결의하도록 시도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제3항).

5. 특별히 중한 부정처사 수뢰와 부정 처사 관련 뇌물공여죄(제335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지는 특별히 중한 경우로는 제33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과 결합한 제1항 제1호의 행위, 제334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및 각각 제3항과 결합한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332조 제2항 및 제3항과 결합한 제2항의 행위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히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1. 행위가 대규모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 2. 행위자가 장래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이익을 계속적으로 수수한 경우, 3.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그러한 행위의 계속적 범행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 등이다.

6. 공모에 있어서 경쟁을 제한하는 협상 금지(제298조)

물품이나 영업적 급부를 공모함에 있어서 모집자에게 특정한 청약을 수용하도록 유발하는 위법한 협상에 기초하여 청약을 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제1항). 이 경우에 공모는 선행된 참여경쟁에 의한 경매 없는 계약의 발주와 동일하다(제2항). 모집자가

청약을 수용하거나 자신의 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자의로 방지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한다. 행위자의 관여 없이 청약이 수용되지 아니하거나 모집자의 급부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의로 입찰의 수용이나 급부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행위자의 노력이 있으면 처벌되지 아니한다(제3항).

7. 영업적 거래에 있어서 부정수재 및 부정증재죄(제299조)

영업적 경영의 종업원이나 대리인으로서, 영업적 거래에서 상품이나 영업적 급부를 구입할 때 경쟁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우대할 것이라는 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약속받거나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제1항).³⁴⁾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적 거래에서 상품이나 영업적 급부를 구입할 때 경쟁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우대할 것이라는 데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영업적 경영의 종업원이나 대리인에게 그들 또는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거나 약속하거나 공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제2항).³⁵⁾ 제1항과 제2항은 외국에서의 경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제3항).



34)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그러한 행위의 계속적 범행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제73d조를 준용한다(형법 제302조 제1항).

35)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의 계속적 범행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제43a조와 제73d조를 준용한다. 제73d조는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행위한 경우에 한하여 준용된다(형법 제302조 제2항).

영업적 거래에서의 부정수재와 부정증재는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권에 의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제301조 제1항). 피해자 이외에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규정된 모든 영업운영자, 조합, 상공회의소도 제1항에 의한 고소권을 가진다(제301조 제2항).

8. 영업적 거래에서의 부정수재와 부정증재의 특히 중한 경우(제300조)

제299조에 의한 행위가 특히 중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 당해 행위가 거대한 재산상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와 2. 행위자가 영업적으로 또는 당해 행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9. 선거인매수죄(제108b조)

선거하지 아니하도록 또는 제한된 의미로 선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금품 또는 기타의 이익을 제공, 약속, 수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제1항).

선거하지 아니하거나 제한된 의미로 선거하기로 하고 금품 또는 기타의 이익을 요구, 약속 또는 수수한 자도 전 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제2항).

10. 의원의 매수죄(제108e조)

유럽의회 또는 연방, 각 주, 지방자치단체, 지방 자치단체연합의 국민대표의 선거나 투표를 위하여 그 지지표를 매수 또는 매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제1항).

법원은 제1항의 행위를 이유로 6월 이상의 자유형에 부가하여 공공 선거를 통한 권리취득자격 및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제2항).

VI. 맺음말

독일에는 연방차원에서 아직 통일적인 부패에 관한 일반법률은 입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연방 차원의 개별 법률을 통하여 규제해 오고 있으며, 몇몇 주는 법률을 통하여 부패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부패등록부'란 제도를 두어 부패하거나 부패가 의심스러운 사업체를 공공계약에서 배제시키는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다양한 행정규칙이나 지침을 통하여 부패가 의심스러운 모든 영역에 적용하고 있다.

박 희 영

(해외입법조사위원,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